

심사보고서

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95
----------	-----

2017. 10. 24(화)
행 정 문 화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7년 9월 29일

다. 회부일자 : 2017년 9월 29일

라. 상정일자 : 2017년 10월 13일

-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 · 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오진섭 행정국장)

가. 제안사유

○ 집중호우로 건축물 피해를 입은 주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역자원 시설세를 감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17년 7월 집중호우로 유실, 전파, 반파, 침수된 건축물에 부과되는 2017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면제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호)

- 금번 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은
- 2017년 7월 집중호우로 건축물의 유실, 전파, 반파,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호우 피해 주민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 충청북도에서는 공공시설 415억 9백만원, 사유시설 131억 6천만원 등 총 546억 6천9백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유실, 전파, 반파, 침수된 건축물에 대하여 주민이 부담할 지역자원시설세 100%를 감면시켜 줌으로써 다소나마 피해 주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감면액이 총 1천만원밖에 되지 않아 부담경감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의안번호	제 695호
의결 연월일	2017년 월 일 (제 회)

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17년 9월 29일

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의안 번호	695
----------	-----

제출연월일 : 2017년 9월 29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집중호우로 건축물 피해를 입은 주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7년 7월 집중호우로 유실,전파,반파,침수된 건축물에 대하여
2017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면제

3. 의안전문 : 붙임

4. 관계법령 발체 : 붙임

5. 비용추계서 : 붙임

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대상

2017년 7월 집중호우로 유실, 전파, 반파, 침수된 건축물

※ 피해구분 기준은 '17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의함

2. 감면세목 및 내용

건축물에 부과되는 2017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를 면제한다.

3. 기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 ④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壊)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특정부동산 :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2. 특정부동산

가. 건축물 : 건축물의 소재지

나. 선박 :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다. 토지 : 토지의 소재지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초과 1,300만원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초과 2,600만원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초과 3,900만원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초과 64,00만원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초과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과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 및 제6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제147조(부과징수)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및 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③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컨테이너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⑤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시설종목을 표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16조(징수방법 등) 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②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별 종합합산방법·별도합산방법, 세액산정 및 그 밖에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 충청북도 도세조례

제18조(세율) 법 제146조제4항에 따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같은 조 제2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0조(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3항에 따른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화력발전,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은 충청북도 전 지역으로 한다.

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2017년 7월 집중호우 피해 주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피해 건축물에 대한 2017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를 감면함

2. 비용 발생 요인

- 감면대상 : 2017년 7월 집중호우로 유실,전파,반파,침수 된 건축물
- 감면내용 : 2017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면제

3. 관련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7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기준

나. 추계 결과

- 10백만원 정도 감면

다. 재원조달방안

- 별도 재원조달 불필요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생략

6. 작성자 : 행정국 세정과장 김 태 선